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인정된죄명: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(인정된죄명:강요)

[서울중앙지법 2009. 10. 29. 2009고단4470]



【판시사항】

- [1]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,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,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 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,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'협박'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- [2] 시민단체의 대표가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해당 기업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,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

[판결요지]

- [1]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,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,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 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,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'협박'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.
- [2] 시민단체의 대표가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해당 기업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,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- [1] 형법 제324조, 제350조
- [2] 형법 제20조

【참조판례】

[2]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98다51091 판결(공2001하, 1835)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외 1인

【검 사】이준식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이승준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- 2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 2는 각 무죄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